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및
평화의 소녀상 모욕 금지·처벌 〉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584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773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876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5
2. 조형물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추가	17
3.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시 처벌	23

I. 제안경위

1. 김선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4. 8. 6.

다. 회 부 일 : 2024. 8. 7.

2. 서영교의원안

가.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64인

나. 제 안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3. 김용만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선민의원안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

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서영교의원안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

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할 경우 기존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

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3. 김용만의원안

최근 국내외에서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훼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더구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역사를 지우기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소녀상 건립 방해와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의 건립·보존과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 조치를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및 제16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현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설></u>	제2조(정의) ---- ----- ----- -----.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써 입은 피해를 말한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	2. ----- -----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	2. ----- -----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	

현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u>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u> <u>2. (생략)</u> <u><신설></u>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을 -----.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제16조(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현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	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

현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u>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u> <u>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u>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u> <u>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u> <u>는 처벌하지 아니한다.</u>	<u>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u> <u>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u>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u> <u>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u> <u>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u> <u>처벌하지 아니한다.</u>	<u>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u> <u>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u>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u> <u>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u> <u>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u> <u>처벌하지 아니한다.</u>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먼저, 김선민의원안과 서영교의원안은 제2조제1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서영교의원안은 제16조제1항)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함) 제13조¹⁾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이라 함) 제13조²⁾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입법례 >

구 분	「4·3사건법」 제13조	「노근리사건법」 제13조	제16조(김선민의원안) 제16조제1항(서영교의원안)
목적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공연성	요구	요구	요구
금지행위	허위사실 유포	조사결과 부인 또는 왜곡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 또는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의 주체	희생자, 유족, 유족회등 관련 단체	희생자,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처벌규정	없음		

김선민의원안 제16조, 서영교의원안 제16조제1항과 「4·3사건법」 제13조, 「노근리사건법」 제13조는 모두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처벌은 「형법」³⁾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⁴⁾에 의할 것으로 보임.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하여 김선민 의원안과 서영교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하고, 안 제17조에서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용만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안 제16조에서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의 원안 및 서영교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개정안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예훼손’ 또는 ‘목적범’⁵⁾을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

요하지 아니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유사하게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허위사실 유포’만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6)(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함)이 있음(2021. 1. 5. 개정·시행).

「5·18민주화운동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한 것임⁷⁾.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다른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696호)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0.11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법」 과 개정안 비교 >

「5.18민주화운동법」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u>토론회</u> ,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u>발언</u>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u>시사</u> 사건이나 역사의 <u>진행과정에 관한 보도</u>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u>토론회</u> ,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u>연설</u> , <u>발언</u> 또는 <u>저작물</u> , <u>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u>시사</u> 에 관한 <u>보도</u>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u>강의</u> , <u>토론회</u> ,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u>연설</u> , <u>발언</u> 또는 <u>저작물</u> , <u>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u>시사</u> 사건이나 역사의 <u>진행과정에 관한 보도</u>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2. (생략)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u>강의</u> , <u>토론회</u> ,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u>연설</u> , <u>발언</u> 또는 <u>저작물</u> , <u>인쇄물</u>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u>시사</u> 사건이나 역사의 <u>진행과정에 관한 보도</u> 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이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달리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방법에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 및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작물⁹⁾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론회 등에서 발언이나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7조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¹⁰⁾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유사 입법례인 「5·18민주화운동법」¹¹⁾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선민의원안의 경우 제외하고 있는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영교의원안 및 김용만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및 피해자 정의규정과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규정 신설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의 사전 예방과 사자(死者)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한

10)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는 의견이고,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전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 후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조형물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추가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의 건립 및 보존사업과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임(김용만의원안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 행	김용만의원안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 건립 및 보존사업</u>
<u><신설></u>	<u>7. 조형물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u>
<u>6. (생략)</u>	<u>8. (현행 제6호와 같음)</u>
<u>② (생략)</u>	<u>② (현행과 같음)</u>

현행법¹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

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 및 청소년 작품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¹³⁾에 따라 한국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대외협력,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 사업등을 하고 있음.¹⁴⁾

13)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 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1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안부’문제 연구소) 사업>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은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는 2024년 10월 기준 154개가 설치¹⁵⁾되어 있으며,

해외에는 민간단체 조사결과¹⁶⁾에 따르면 9개국에 31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4년 예산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주관 기념사업	‘기림의날’ 기념식	200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의미에 대해 전국민이 공유·연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전국적으로 추모·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공연 및 기념식, 청소년 작품 전시회 개최
	청소년작품공모전	1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사업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980	- 국내외 자료 조사 및 목록화, 연구서 발간 - 일본 국회 회의록 수집 및 번역해제 - 국문·영문 웹진 및 뉴스레터 운영, 영문 콘텐츠 발행 - 학술 콜로키움 개최,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 발행 - 디지털 아카이브 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 연구소 자료센터 관리 운영 - 자료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서비스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외 협력	289	-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기념사업 지원
	일본군‘위안부’문제 전시 및 유네스코 지원	35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활동 지원 -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회 개최

자료: 여성가족부

15) < 평화의 소녀상 설치 현황(2024. 10. 기준) >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총계
개수	23	3	3	2	6	3	1	1	36	6	13	13	16	7	11	1	9	154

자료: 여성가족부

16) < 해외 일본군‘위안부’ 기림비, 평화비 건립현황(20241016)>

(단위: 개수)

구분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합계
소녀상	4	2	1	2	15	1	2	3	1	31

자료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건립 주체의 87.6%(135개)가 민간 단체¹⁷⁾이며, 관리주체는 62.9%(97개)가 지방자치단체¹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1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8개(34.3%)¹⁹⁾ 지방자치단체만이 관련 조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등)를 독자적으로 제정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평화의 소녀상 97개 중 49개(50.5%)는 관리 규정이 없고, 민간단체 등의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의 경우 평화의 소녀상의 위치나 관리주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7)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체 > * 건립 주체 중복 포함(3)

구분	민간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학교, 개인 등)
건수	135개	10개	12개
비율	87.6%	6.5%	7.8%

자료: 여성가족부

18) < 평화의 소녀상 관리 주체 > * 관리 주체 중복 포함(7)

구분	민간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학교, 개인 등)
건수	44개	97개	20개
비율	28.5%	62.9%	12.9%

자료: 여성가족부

19) [참고자료] 140개 지자체(시·군·구) 중 48개(34.3%) 지자체 관련 조례 운영

* 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형태로 제정·운영 중(부산시의 경우 남구, 부산진구, 동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조례로 제정·운영)

수행하는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함)의 건립 및 보존사업과 조형물 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외에 건립된 조형물 등을 보존하기 국제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에 기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형물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형물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개정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조형물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수행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 제11조제1항제7호는 현행 규정으로도 수행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타국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김선민의원안과 김용만의원안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김선민의원안만 해당함. 이하 같음)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김선민의원안 제18조 신설, 서영교의원안 제16조제2항 신설, 김용만의원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 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신 설>	제18조(일본군위안부 피해 상징물에 대한 모욕 금지)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의미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u>	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등) ② <u>누구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말한다)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u>	제16조(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등) ③ <u>조형물 등20)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현 행	김선민의원안	서영교의원안	김용만의원안
	<u>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평화의 소녀상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형법」상의 재물손괴죄²¹⁾ 적용이 어렵고, 모욕죄²²⁾의 경우 또한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나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이 아닌 동상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20) 김용만의원안 제11조제1항제6호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 건립 및 보존사업

21)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2)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김선민·서영교의원안)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등 또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김용만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이 아닌 동상이라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 없이 “오욕²³⁾”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유사입법례인 「형법」 제105조²⁴⁾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형량의 경우 김선민의원안과 김용만의원안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23) 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

24)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하는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법률상 평화의 소녀상(김선민·서영교의원안) 또는 조형물등(김용만의원안)의 규격 또는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법률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평화의 소녀상” 또는 “조형물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154개 중 48개(31.2%)에 불과한 상황임²⁵⁾.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또는 “조형물등”의 인정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안 제18조의 형량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보다

25) [참고자료] 140개 지자체(시·군·구) 중 48개(34.3%) 지자체 관련 조례 운영

* 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형태로 제정·운영 중

낮아 별도의 개정실익이 크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부분은 적용대상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 현황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관 리 대 상 소 녀 상
1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3	광주광역시 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4	광주광역시 동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1
5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
6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1
7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8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9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0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11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2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1
13	보은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14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3
15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16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7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18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19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0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21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22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23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1
24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연 번	지 방 자 치 단 체 조 례	관 리 대 상 소 녀 상
25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6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27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28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29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1
30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
31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32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1
33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1
34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1
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6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7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3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	1
4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1
4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1
44	여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
45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46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
합 계		48

주 1) 부산시의 경우 남구, 부산진구, 동구에 3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조례로 제정·운영

주 2) 가나다 순

자료: 여성가족부